

인권헌장

제정 목적

(주)현진정공은 인권경영을 적극적으로 이행함과 동시에 사업 운영에 따른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관련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해 본 인권헌장을 선언한다.

(주)현진정공은 인권경영 이행을 위해 세계인권선언, UN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 및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OECD 실사 가이드라인 등 인권·노동 관련 국제 표준 및 가이드라인을 준수한다.

적용 범위

본 인권헌장의 적용대상은 (주)현진정공의 임원과 직원, 비정규직을 포함한다. 또한, (주)현진정공 임직원은 공급자 및 판매·서비스 조직을 대할 때에도 본 인권헌장을 따르며, 더 나아가 거래관계에 있는 모든 이해관계자가 본 인권헌장을 존중할 수 있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본 인권헌장에서 다루는 사항이 현지 국가의 법규와 상충되는 경우에는 현지 법규를 우선적으로 준수하고, 해당 국가에서 요구하는 법규 및 산업 특성을 반영하여 본 인권헌장을 개정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필요 시 별도의 세부 정책을 수립할 수 있다. 해당 국가의 법규나 조직의 정관 또는 사규 등에 특별한 조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현진정공의 모든 임직원은 본 인권헌장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다.

기본 원칙

제1조. 차별금지

(주)현진정공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모든 임직원의 성별, 인종, 민족, 국적, 종교, 장애, 나이, 가족현황, 직위, 직급, 계약기간, 비정규직, 노동조합 가입여부, 사회적 신분 및 정치적 견해 임신,출산등을 이유로 모집, 채용, 승진, 교육, 임금, 복리후생 등의 고용과 관련해 차별하지 않으며, 임직원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조직문화를 구축한다.

제2조. 근로조건 준수

(주)현진정공은 는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별 법정근로시간을 준수하며, 모든 임직원에게 근로에 대한 합당한 보수를 급여명세서와 함께 지급한다.
또한, 모든 임직원의 역량 개발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충분한 교육기회와 직무수행에 적절한 업무환경을 제공한다.

제3조. 인도적 대우

(주)현진정공은 는 모든 임직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하며, 정신적이거나 육체적으로 강압, 학대, 불합리한 대우를 하지 않는다.

제4조. 강제노동 및 아동노동 금지

(주)현진정공은 는 모든 임직원에게 대해 폭행, 협박, 감금 등의 행위를 하거나, 신분증 또는 사증 등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자유의사에 반하는 근로를 강요하지 않는다.
또한, 아동노동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연소자에 대해서는 근로로 인하여 교육기회가 제한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한다.

제5조. 성희롱 및 직장내 괴롭힘 금지

근로자에게, 또는 근로자 상호간의 강압적 언어 폭력, 신체적 접촉과 성희롱, 성폭력을 비롯한 성적 강압행위, 정신적 강압 등을 허용하지 않으며, 관련 사건 발생시 즉시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한다.

제6조. 산업안전 보장

(주)현진정공은 는 모든 임직원이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사업장의 시설, 장비, 도구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며, 신체적·정신적 위험 예방 목적의 적절한 조치와 사후관리를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제8조. 지역주민 인권 보호

(주)현진정공은 의 모든 임직원은 업무 수행 시 지역주민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하며, 지역주민의 안전보건에 대한 권리, 거주 자유를 보호한다.

제9조. 고객 및 협력사 인권 보호

(주)현진정공은 의 모든 임직원은 고객 및 협력사와 업무를 진행함에 있어 고객 및 협력사 임직원들의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경영활동으로 수집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최선의 조치를 취한다.

제10조. 사생활 보호

(주)현진정공은 의 모든 임직원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 받지 아니한다
사생활의 자유로운 형성을 방해거나 금지하는 것을 금한다

인권 침해 관련 고충처리 프로세스

(주)현진정공은 는 인권침해를 당하거나, 또는 인권 리스크를 인지하고 있는 임직원 및 기타 사람이나 단체(신고인)로부터 신고를 받을 수 있는 채널을 운영한다.

이 때 임직원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익명성을 보장한다.

절차

인권노동 문제 접수 > 조사 > 심의 및 검토 > 대책 방안 수립 > 시정조치 > 완료보고 > 유효성 점검

징계조치

상기 사항을 위반할시 징계위원회 소집하여 당사 내규에 따라 징계 조치를 실시한다

(주) 현진정공 대표이사 김진철 / 부사장 김상현